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9
----------	-----

제출년월일 96.12. .
제 출 자 파주시장

☐ 제안이유

‘96.6.4 주차장법시행령 및 ‘96.6.29주차장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실에 맞는 주차장법을 운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부설주차장의 설치시설물 및 설치기준 강화(안제19조①항 관련 별표2)
- 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서 직선거리 5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미터이내(안제20조①항)
- 다. 부설주차장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당해토지 평가금액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설치비용으로 기준변경(안제21조②항)
- 라. 부설주차장설치기준중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10대당 1면이상 설치(안제24조⑤)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9조3항 및 영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0조 제1항중 “직선거리 300미터이내”를 “직선거리5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미터이내”로 한다.

제21조 제2항중 “당해토지 평가금액으로 하며”를 “주차에 사용 되는 시설의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하며”로 한다.

제2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10대당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9조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숙박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2객실당1대 + 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기타부대시설면적 4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80㎡당 1대
의료시설	종합병원	3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 타	시설면적 120㎡당 1대
운동시설	골프장	1홀당 12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12인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20㎡당 1대
관람집회 시 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80인당 1대
	예 식 장	시설면적 3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80㎡당 1대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5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60㎡당 1대
위락시설(숙박 시설에부대하여 설치되는위락시 설을 제외한다)	유흥음식점	시설면적 3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50㎡당 1대
업무시설, 종교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 시설(냉동, 냉장창고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50㎡당 1대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60㎡당 1대
단 독 주 택		건축연면적 80㎡초과 150㎡이하는1대, 건 축연면적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 ㎡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80㎡당 1대(주택건설기준등 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준농림 지역에서의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 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유흥음식점 , 공동주택, 준도시지역안에서의 주택		상기 시설물 용도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①법제19조제3항 및 영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이상확보하여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영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시설물이 소멸할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	①법제19조제3항 및 영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와 같다.	②----- ----- ----- ----- ----- ----- -----	'96.6.29.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과 주차수요증가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함.
제20조(부설주차장의인근설치)①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인근설치)	①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5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100미터이내로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①(생략) ②영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u>담해토지 평가금액으로 하</u> <u>며, 무상사용기간은 ----</u> ----- ----- 20년 이내로 한다. 제24조(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①~④(생략) <u>(신설)</u>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①(현행과 같음) ②영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u>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u> <u>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u> <u>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무상</u> <u>사용기간은 -----</u> ----- 20년이내로한다. 제24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④(현행과 같음) ⑤<u>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u> <u>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10</u> <u>대당 1면이상 설치하여야 한</u> <u>다.</u>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2)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9조관련)				(별표2)(현행과 같음)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건물	시 설 물		설치기준
숙박 시설	호텔, 관 관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 엄	2객실당 1대 + 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기타 부대시설면적 40㎡당1대		숙박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현행과 같음
	기 타	시설면적 120㎡당 1대	상업지역의 경 우는면적 120㎡미만건축 물, 상업지역외 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400㎡미만인 시설물		기 타	시설면적80㎡당 1대
의료 시설	종합병원	3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100㎡ 당 1대로 산정 된 대수중 많은 대수		의료시설	종합병원	현행과 같음
	기 타	시설면적 120㎡당 1대	상업지역의 경 우는 면적120 ㎡미만인 시설 물, 상업지역외 의 지역의 경 우는 400㎡미 만인 시설물		기 타	시설면적120㎡당 1대
운동 시설	골프장	1홀당 12대		운동시설	골프장	1홀당12대
	골 프 연습장	1타석당 1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 외 수영장	정원12인당1대			옥외수영장	정원12인당1대
	기 타	상업지역:시설 면적120㎡당1대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준 공업지역:150㎡ 당1대, 기타지역 :120㎡당1대			기 타	시설면적120㎡당 1대

현행				개정안			
시설명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건축물	시설명		설치기준	
관람 집회 시설	운동경기 관람	수용인원120인 당1대		관람집회시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80인당 1대	
	예식장	시설면적60㎡당 1대			예식장	시설면적30㎡당 1대	
	기 타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 거지역, 준공업 지역:시설면적 100㎡당1대			기 타	시설면적80㎡당 1대	
		기타지역:시설 면적120㎡당1대					
운수 시설	공항시설, 버스터 미널, 철 도역	시설면적120㎡ 당 1대	면적120㎡미만 인 건축물	운수시설		삭 제	
	기 타	상업지역:시설 면적120㎡당1대 일반주거지역, 준 공업지역:시설 면적150㎡당1대 기타지역:시설 면적200㎡당1대	상업지역의 경 우는 면적120 ㎡미만인 시설 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400㎡미만인 시설물			삭 제	
판 매 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60㎡ 당 1대	면적60㎡미만 인 시설물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30㎡당 1대	
	기타	시설면적80㎡당 1대	상업지역의 경 우는 면적80㎡ 미만인 시설물 ,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400㎡미만 인 시설물		기 타	시설면적60㎡당 1대	
위락 시설	유 흥 음식점	시설면적60㎡당 1대	시설면적60㎡ 미만인 시설물	위락시설(숙박 시설에 부대하 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제 외한다)	유흥음식점	시설면적30㎡당 1대	
	기 타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 거지역, 준공업 지역:시설면적 80㎡당1대 기타 지역:시설면적1 00㎡당1대	상업지역의 경 우는 면적8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 지 역의 경우는 면적400㎡미만 인시설물		기 타	시설면적50㎡당 1대	

현행			개정안	
시설명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건물	시설명	설치기준
업무시설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 100㎡당 1대 기타지역: 시설면적 12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400㎡미만인 시설물	업무시설 종교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종교시설, 전시시설, 통신합영 시설, 창고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400㎡미만인 시설물	전시시설 운송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냉동, 냉장창고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50㎡당 1대
근린 생활 시설	시설면적 18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8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400㎡미만인 시설물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60㎡당 1대
단독주택	건축면적 200㎡이하는 1대, 건축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50㎡당 1대를 더한 대수	면적 150㎡미만인 건축물	단독주택	건축면적 80㎡초과 150㎡이하는 1대, 건축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건축면적 100㎡당 1대	면적 100㎡미만인 건축물	공동주택	건축면적 80㎡당 1대(주택건설기준 등에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400㎡미만인 시설물 기타지역의 경우는 면적 800㎡미만인 시설물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현행			개정안	
시설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건물	시설물	설치기준
(신설)			<u>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에서의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유흥음 식점, 공동주택, 준도시지역안에 서의 주택</u>	<u>상기 시설물용도 의 설치기준에 의한다</u>

6.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

②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공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취지를 노외주차장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의 제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등(이하 "시설물설치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용도변경전에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부설주차장의 규모 및 형태
3. 공사착수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본조신설 96·6·4)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6·6·4>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96·6·4>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6·6·4>

(추 73)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다. <신설 95·2·18>

1. 준공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의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위락시설

나. 판매시설

다. 숙박시설

라. 관람집회시설(객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공연장을 제외한다)

2. 당해 시설물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7 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제 4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95·2·18, 96·6·4>

1. 도로교통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19조제 4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6·6·4>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③법 제19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추 73)

[별표 1] <개정 96.6.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숙박 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2객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기타 부대시설면적 4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50㎡당 1대
의료 시설	종합병원	3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 타	시설면적 150㎡당 1대
운동 시설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육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50㎡당 1대
관람 집회 시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예식장	시설면적 5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판매 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8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위락시설(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제외한다)		유흥음식점
		기 타
업무시설, 종교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50㎡당 1대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1대, 건축연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주 73)

	더한 대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120㎡당 1대(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비 고

1.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되,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두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이고 전체 시설물의 면적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중 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 73)

8. 숙박시설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카페·일바·다실·연회실·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개정 96.6.4>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주차장법)	과징금액
1.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	법 제15조제2항	250만원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법 제15조제2항	100만원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	법 제6조제1항	50만원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 제17조제2항	50만원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제1항	50만원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제3항	50만원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 제25조제1항	50만원

비고 : 위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주 73)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때에는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이상(평행주차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로 한다.
3. 주차대수 4대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로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제 1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의 사이에는 담장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95.8.5>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계획서) 영 제 7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계획서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등) ①영 제 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 5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납부할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인이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등을 할 때에 별지 제 5 호서식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법 제19조제 7 항 및 영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주 74)

1.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전문개정 96.6.29)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등) 영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부설주차장설치면제신청 및 비용납부 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신청등)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5.26>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외의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전면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제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이하, 너비 1.85미터이하, 높이 1.55미터이하, 무게 1,600킬로그램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너비 8.1미터이상, 길이 9.5미터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직경 4미터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이상의 여유공지

나. 대형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이하, 너비 2.05미터이하, 높이 1.55미터

(후 74)

"으뜸파주 일등경기 일류한국"

파 주 시

우 413-020. 경기도 파주시 아등동 215 / 전화 0348-940-4367 / 담당 조 근 호

문서번호 교행 91107 - 1673
시행일자 1996. 11 . 15 . (3 년)

(경 유)
받 는 곳 받는곳참조
참 조

취급		시 장
보존	3 년	
부시장	전 결	
국 장	1백	
과 장	사 2백	계획·행정안전국 자치계장
기안자	조 근 호	교통지도계장

제 목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정농촌위원회

1. '96. 6. 4 주차장법시행령및 '96. 6. 29 주차장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붙임 예고문(안)을 게시한후 그 결과를 사진(3x4)2매를 첨부하여 '96. 11. 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제명: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개정(안)

나. 입법예고: 본청및읍.면.동계시판.시정지.유선방송등

다. 예고기간: '96. 11월²⁰18일 - '96. 12. ³⁰4일(20일)

붙 임 1. 입법예고문(안) 1부

2.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개정(안) 1부. 끝.

파 주 시 장

받 는 곳 노.도.로

"너도나도 교통질서 밝아오는 교통문화"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파주시공고 제 343 호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11월 20일

파 주 시 장

1. 조례제명: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안)

2. 개정취지:

196.6.4주차장법시행령및 '96.6.29일 주차장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실에 맞는 주차장법을 운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제19조)

별표2의 부설주차장설치시설물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현행제도를 별첨 별표2로 개정하려는 것임.

나. 부설주차장인근설치에 대하여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현행제도를 "직선거리 5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미터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임.

다. 무상사용주차장 비용납부 산출방식에 대하여

당해토지 평가금액의 현행제도를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설치비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라.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설치시 40대이상은 지체부자유자 전용구획선을 1면이상 설치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단체 또는 개인은 '96. 12월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등

" 지방화, 세계화로 고향발전, 나라발전 "

파 주 시

우편번호: 413-800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T 940-4457) 팩스 941-9998 담당 이이성

문서번호 주택 58551 - 233

시행일자 1996. 8. 26.

(경유)

발원 교통행정과장

참조

선결			지
접	일자	196. 8. 19.	시
수	번호	1532	결
	처 리 과	교통행정과	재
	달 당 자	조근호리	공
			람

제목 주차장설치 조례 개정(안)

'96. 6. 4.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96. 6. 3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장 설치조례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주차장법을 운용하여 주차난해소 및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코저 동 조례(안)이 파주시 주차장설치 조례에 조속한 시일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로붙임: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끝"

주

택

과

문헌은 어느분야에 세계일류입니다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같이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과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5조제1항의 본문중 "직선거리 300m이내"를 "직선거리 50m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m이내"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0
----------	-----

제출년월일 : '96. 12. 1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체육진흥기금 5억원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자)으로 지도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체육시설 확충사업,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지원코자 하였으나 5억원에 대한 수익금으로는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기금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익금으로 조례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 지원코자함.

2. 주요골자

- 가.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조성
(안 제3조 제1항)
- 나. 운용기금사용(지원) 대상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추가
(안 제6조 제4호)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적립금의 총액이 “5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수익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출연한다”를 “수익금 일부를 적립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5억원이상”을 “10억원이상”으로 한다.

제6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조(기금의조성)① 기금의 조성 목표는 <u>5억원</u> 으로 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입 은 제외한다. ② (생략)	제3조(기금의조성)① ----- ----- <u>10억원</u> ----- . ----- -----. ② (현행과 같음)	체육진흥기금 5억원을 10억 으로 수익금일부를 적립금으로 출연
제5조(기금의운용)①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적립금의 총액이 <u>5억원</u> 이 될 때까지는 기 금에서 발생하는 <u>수익금 전액</u> <u>을 적립금으로 출연한다.</u> ②기금이 <u>5억원</u> 이상이면 수 익금중 연간 운용기금을 제외한 잔액은 적립금으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운용)① ----- ----- ----- <u>10억원</u> ----- ----- <u>수익금 일부를</u> <u>적립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u> ②----- <u>10억원</u> ----- ----- -----.	
제6조(운용기금의사용) 운용기금 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 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6조(운용기금의사용)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체육회 사무국 운영비</u> 5. (현행과 같음)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1996. 3. 1 조례 제71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용관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파주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파주시에서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체육진흥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체육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적립금의 이자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 3 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의 조성목표는 5억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②기금은 1999년까지 조성하되, 재원은 파주시 일반회계출연금으로 한다.

제 4 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관리한다.

②적립금은 파주시 금고로 계약된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 5 조(기금의 운용) ①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적립금의 총액이 5억원이 될때까지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출연한다.

②기금이 5억원 이상이 되면 수익금중 연간 운용기금을 제외한 잔액은 적립금으로 출연한다.

제 6 조(운용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도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시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시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 7 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시장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계장으로 한다.

제 8 조(관계규정의 준용) 운용기금의 집행은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결산) 운용기금 사용에 관한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기금운용관이 작성하여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시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11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第132條 (經費의 支出) 地方自治團體는 그 自治事務의 수행에 필요한 經費와 委任된 事務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를 支出할 義務를 진다. 다만, 國家事務 또는 地方自治團體事務를 委任하는 때에는 이를 委任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그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第4節 財産 및 公共施設

第133條 (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보유하거나,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第1項의 財産의 보유,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改正 94.3.16>

③第1項에서 “財産”이라 함은 現金의 모든 財産的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

第134條 (財産의 管理 및 處分)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은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交換·讓與·貸與하거나 出資 또는 支給의 手段으로 사용할 수 없다.

第135條 (公共施設)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③第1項의 公共施設은 관계地方自治團體의 同意를 얻어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內에 設置할 수 있다.

第5節 補 則

第136條 (地方財政運營에 관한 法律의 制定)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37條 (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增進과 事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地方公企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38條 削除 <94.3.16>

第8章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關係

(주 46)

權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하거나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不利하게 效力을 變更할 수 없다.

第108條 (管理의 방법등) ①債權의 管理에 관한 事務는 債權의 發生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이익에 가장 適當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債權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債務者・債權金額 및 履行期限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帳簿에 기재하고, 그 管理의 徹底를 기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債務의 管理에 관하여도 이를 準用한다.

第4節 公共施設 및 基金

第109條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 ①地方自治法 第13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公共施設을 設置함에 있어서 그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補助받아야 할 公共施設에 관한 條例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거쳐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內務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승인에 앞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효율적인 管理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의 者에게 委託하여 그 公共施設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第110條 (基金의 運用등) ①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정하는 특별한 目的을 위하여 設하고 효율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지원을 目的으로 하는 基金의 경우에는 그 基金의 造成을 위하여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新設 91.12.31)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며, 出納閉鎖後 3月 이내에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書와 基金決算報告書를 每 會計年度마다 각각 歲入・歲出豫算案 또는 決算書와 함께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事務의 일부를 소속公務員에게 위임하거나 地方自治團體의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委託받은 事務를 담당하는 者의 책임에 관하여는 第

(후 56)